

의안번호	2217781
의 퇴 인	최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06.24.
추계번호	26C1797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5 (지역균형인재의 정주 지원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등은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라 의무근무 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2. 주택의 매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지원 및 이자 보전 3. 사택 또는 기숙사의 제공 4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 감면 5. 그 밖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2	안 제15조의2 (전문직 양성과정 지역인재의 의무 복무 등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무복무장학생(이하 “의무복무학생”이라 한다)을 선발하여, 입학금·수업료·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(제4항) 의무복무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1.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. 의무복무학생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자격을 포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의무규정
3	안 제20조의2 (교육격차영향평가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·평가(이하 “교육격차영향평가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 (제2항) 제1항에 따른 교육격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정책 2.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책 3.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정책 4. 그 밖에 지역 간 교육 격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(제3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격차영향평가 결과 해당 정책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5 (지역균형인재의 정주 지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5조의2 (전문직 양성과정 지역인재의 의무복무 등)	
3	안 제20조의2 (교육격차영향평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공공기관 및 대학 전문직 양성과정의 지역균형인재(이하 “지역인재”) 선발을 의무화하거나 그 비율을 상향하고, ②선발된 인원이 해당 지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며, ③이행실적 평가 및 제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
- 또한, ④국가 등이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의 정주 여건 및 경비를 지원하고, ⑤주요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격차영향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)를 실시하도록 규정함

[표 1] 개정안의 주요내용

현행	개정안
☐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(§13) ○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역인재 신규 채용 권고 ○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35% 이상 신규 채용 의무 ☐ <신 설>	☐ (현행과 같음) ○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35% 이상 신규 채용 의무 ○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50% 이상 신규 채용 의무 ☐ 지역인재의 의무근무(§13의2) ○ 채용된 지역인재의 10년 범위 내 해당 지역 근무

현행	개정안
☐ <신 설>	☐ 지역인재 채용 실적 평가 및 공개(§13의3) ○ 교육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 등의 채용 실적 평가 및 공개
☐ <신 설>	☐ 이행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(§13의4) ○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요구 ○ 개선계획 불이행 시 기관장 경고 또는 해임, 경영실적평가 감점 등 제재
☐ <신 설>	☐ 지역균형인재의 정주 지원 등(§13의5) ○ 의무근무 중인 지역인재에 대한 주택 공급, 자금 융자 및 지방세 감면 등 지원
☐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(§15) ○ 지방대학 의과대학 등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 - 선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단과대학 및 지역별로 5~40% 범위에서 상이함	☐ (현행과 같음) ○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소속 의과대학 등의 지역인재 50% 이상 선발 의무 ○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의 의과대학 등에 대한 지역인재 50% 이상 선발 의무 ○ 의과대학 등을 운영하는 지방대학의 장의 선발실적 보고 ○ 교육부장관의 선발실적 부진대학 제재
☐ <신 설>	☐ 전문직 양성과정 지역인재의 의무복무 등(§15의2) ○ 국가 등의 지역의무복무 장학생 선발 및 경비 지원 ○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의 10년 범위 내 지역대학 소재지 근무 의무 ○ 의무근무 기간 위반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의 지원 경비 등 반환
☐ <신 설>	☐ 교육격차영향평가(§20의2) ○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국가 등의 교육격차영향평가 실시

- ☐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지역인재를 지원하고,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대상자 수 및 단가 등 기초자료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(안 제13조의5)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에 채용된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및 지방세 감면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방식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

- (안 제15조의2) 개정안에 따라 의과대학 등 전문직 양성과정의 지역인재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대상자 선발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단가의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장학생 및 5년 이하 전문의를 대상으로 장학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의 장학제도, 지역필수의사제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예산 38억 3,200만원을 편성함
 - 또한, 정부는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고 선발자의 등록금, 교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
 - (안 제20조의2)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 등의 영향평가 실시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영향평가의 기준 및 실시 대상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